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1년 03월 03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2021년 3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 1. 제안이유

지급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지원대상자 조건에서

“신청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을 “주소를 둔”으로 변경

나. 안 제8조 명절보훈위문금품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조건을

“신청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을

“군에 주소를 둔”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1년 경과” 거주기간 조건은 2019년 12월에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1년 경과”의 거주기간 조건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1년의 거주기간 조건”은 홍천군 6개월 외 강원도 내 타 지자체에는 없는 규정으로 전입으로 인한 1년의 수당수령에 공백이 생겨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1년 경과”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강원도 내 조례시행 14시·군의 수당 및 지급대상비교

	보훈수당 (매월)	지급대상	거주기간 조건여부
평창군 (기존)	20	신청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	○
영월군	15	영월군에 거주하는	X
고성군	15	고성군에 주소를 둔	X
양양군	10	양양군에 주소를 둔	X
인제군	20	인제군에 주소를 둔	X
철원군	30	철원군에 주소를 둔	X
화천군	20	화천군에 주소를 둔	X
정선군	15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X
횡성군	15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
강릉시	10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X
동해시	10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X
삼척시	20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X
속초시	10	속초시에 주소를 둔	X
원주시	10	원주시에 주소를 둔	X
춘천시	10	춘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X

- “주민등록을 두고”는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 “주소를 둔”으로 개정추세임.

## 둘째, 안 제8조에서는

기존 20만원의 보훈영예수당,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외

“예산의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변경 및 신설 내용은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

할 것이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4. 참고자료(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